#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75 발의연월일: 2025. 4. 23.

발 의 자:이재강·김문수·이기헌

모경종 · 김준형 · 이해민

허성무 • 박지원 • 부승찬

정혜경 • 박지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사업·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인력 수급 및 투치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있음.

이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 •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라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수도권 시·도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 지역의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시·군·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는"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을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을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로,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4.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제73조제1항 전단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비수도권 권 시장·군수·구청장"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4조의2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단서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77조제7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각각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각 각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79조제3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각각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각각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각각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한다.

제85조제1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각각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 은 조 제5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 ·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각각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후단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각각 "비수도권 및 특수 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 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단서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각각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각각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각각 "비수도권 및 투수지역 시·도지사등"을 각각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을 각각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단서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수

도권 시·도지사등"을 각각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13조 후단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43조제2항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	13
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이하 " <u>비수도권 시·도등</u> "이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u>시·도등</u>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	
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	
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
	구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
	역의 토지면적이 전체 토
	<u>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u>

14. ~ 17. (생략)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 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이라 한다)는 제74조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 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②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 장이 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 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관할 비수 도권 시 ·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인 시	] • 군 •	구,	「ス]	방자
치분권	년 및 Z	1역균	형발	전에
<u>관한</u>	특별법		세2조	.제12
호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	지역	지원	<u> 특</u>
<u>별법</u> _	제23	스제1호	호에	따른
접경지	<u>] 역</u>			

14. ~ 17. (현행과 같음)

①
<u>자는</u>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지 역의 시장・군수・구청장
- ②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 장 및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 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 ③ • ④ (생 략)

제7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저 ① 민간기업등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u>비수도권 시·도지사</u>등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u>비수도</u>권 시·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간기업등의 제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저

- ①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 1. ~ 10. (생략)
  - ②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규제자유

시·도지
<u>사</u>
③ · ④ (현행과 같음)
세7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①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장
·군수·구청장(이하 "비수도
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
이라 한다)
,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
지사등
② (현행과 같음)
세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ㆍ
도지사등
1. ~ 10. (현행과 같음)
②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ㆍ
도지사등

특구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비수도권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자유투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u>비수도권 시</u>
<u>•도지사등</u>이 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규제자유특구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포함한다)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제7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장・
<u> 군수·구청장</u>
제7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공
고 등 절차 생략) <u>비수도권 및</u>
특수지역 시·도지사등
<del>-</del> .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이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생 략)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 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u>비</u> 수도권 시·도지사등과 민간기 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 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

비수도권 및 특수
<u>지역 시·도지사등</u>
,
 ③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③ (현행과 같음) ④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조에 따른다.

#### ⑤ (생략)

-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 저 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 정)①(생략)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의 권고에 따라 <u>비수도권 시</u> ·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 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 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비수</u> 도권 시·도지사등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신청보다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할수 있다.

④ (생 략)

<b></b> .
⑤ (현행과 같음)
세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
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
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수지역 시·도지사등
<u>.</u>
③
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
<u> </u>
<del>_</del>
· ④ (현행과 같음)

-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① 제77조 ~ ⑥ (생 략) ~ (
  -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u>비수</u> 도권 시·도지사등의 규제자유 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허가등의 의제 관련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이와관련한지원을 협조 요청할수있으며,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이에협조해야한다.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u>비수도권</u> 시·도지사등에게 규제자유특 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7/소(규제자유특구위원회) (1)
~ ⑥ (현행과 같음)
⑦ <u>비수</u>
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
<u> </u>
8
<u>비수도</u>
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
<u>비수도권 및 특</u>
<u>수지역 시·도지사등</u>
<u>.</u>

$\overline{9}$	(생	럌)
(3)	1 7 27	$\rightarrow 1$

- 제7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7
  -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 1. ~ 8. (생략)
  - 9. 규제자유특구 관련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u>비수도권 시·</u> <u>도지사등</u>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10. 11. (생략)
  - ② (생 략)
  -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 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 략산업등의 추진과정에서 비수 도권 시·도등의 조례의 적용 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대 하여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에 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기 심의위원회) ① · ② (생 략)
  -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

⑨ (현행과 같음)
제7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①
1. ~ 8. (현행과 같음)
9
비수도권 및 특
수지역 시·도지사등
10.・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ㆍ
도지사등
· 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3)
<b>⊌</b> 

정기관의 장과 <u>비수도권 시·</u> <u>도지사등</u> 및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 및 임직 원의 특구혁신기획단 파견 또 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u>비수도권</u> 시·도지사등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u>비수도권</u> 시·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생략)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저의 변경)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비수도권 및 특수
지역 시·도지사등
4
<u>비수도</u>
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
<u>· 도지사등</u>
⑤ (현행과 같음)
1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의 변경) ①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ㆍ
<u>도지사등</u>
,
②

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2조부 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하되, 제74조제2 항 및 제75조제2항 중 "30일" 은 각각 "15일"로 본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주민의 권 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지 아니하는 규제자유특구계 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자유 특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 치지 아니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 ④ (생 략)

제8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은 규제자유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
지사등
<b>.</b>
③ · ④ (현행과 같음)
세8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u>비수도권 및 특수지역</u>
<u>시 · 도지사등</u>
<del>-</del> .

- 1. ~ 3. (생략)
- ② (생략)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비수</u> 도권 시·도지사등이 규제자유 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8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운영성과가 부진한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해제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 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 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u>비수도</u> 권 시·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 ⑥ (생 략)
-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저 대한 평가) ① (생 략)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u>비수도</u> 권 시·도지사등에게 관련 자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
<u> </u>
<u>.</u>
4
<u>비수</u>
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
<u> </u>
⑤ · ⑥ (현행과 같음)
세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비수도권</u>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u>비수도</u> 권 시·도지사등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 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에 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u>비수</u> 도권 시·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 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규제 저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 사동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

비스트리 미 토스키여 차 트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
<u>지사등</u>
3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ㆍ
도지사등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u>시 • 도지사등</u>
· ④ (현행과 같음)
세85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비수도권 및 특수지
<u>역 시·도지사등</u>
②

청을 받은 <u>비수도권 시·도지</u> 사등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 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③ ~ ⑤ (생 략)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 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 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 한다)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통 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비수도 권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회신 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규제자유특구위원

<u>비수노권 및 특수지</u>
<u>역 시·도지사등</u>
③ ~ ⑤ (현행과 같음)
6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
지사등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 · 도지사등
⑦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 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 은 날(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 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 터 3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u>비수도권 시·</u> 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 기간에 대해서는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은 제1 항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생략)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 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 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

<u>비수도권 및 특수지역</u>
<u>시 · 도지사등</u>
·
8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
지사등
⑨ (현행과 같음)
데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 권시·도지사등에게 실증을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1. ~ 3. (생략)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u>비수도</u> 권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④ (생 략)

⑤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 특구 관할 <u>비수도권 시·도지</u> 사등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u>비수도권 및</u>
특수지역 시·도지사등
1. ~ 3. (현행과 같음)
② <u>비수도</u>
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
③ • ④ (현행과 같음)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 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u>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를 받은 <u>비수도권 시·도지사</u>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 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생 략)

⑨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6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ㆍ
도지사등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
⑦
<u>н</u> ]
<u>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u>
사등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u>시·도지사등</u>
 ⑧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 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 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 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u>비수도권 시</u> •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생략)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7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 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은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 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 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

<u>비수도권 및 특</u>
수지역 시·도지사등
⑩ (현행과 같음)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u>비수도권 및</u>
특수지역 시·도지사등
②
<u>비수도권 및 특수</u>

지사등은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 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투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 지사등 및 실증사업자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관련된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을 알려야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의 저해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한다.

# ④ · ⑤ (생 략)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 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 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u>지역 시·도지사등</u>
,
③
<u>비수도권 및 특</u>
수지역 시·도지사등
④ · ⑤ (현행과 같음)
6
<u>비수도권 및 특수지역</u>
<u>시 · 도지사등</u>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법령 정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생략)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경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다른 법률에서 금지되는 것이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있다.
- ⑨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⑦ (현행과 같음)
8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u>비수도</u> 권 시·도지사등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법령 정비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생략)

① 실증사업자(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 외한다)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 당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관할 <u>비수도권</u> 신·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 ⑭ (생 략)

-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생 략)
  -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 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

<u>비수</u>
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
<u> </u>
⑩ (현행과 같음)
①
, , , , , , , , , , , , , , , , , , ,
<u>비수도권 및</u> 토스키어 기 도키기도
특수지역 시·도지사등
 ② ~ ⑭ (현행과 같음)
[] 1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가 어려운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 별도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u>비수도권</u>
시·도지사등은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② (생략)
- 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u>म</u> ]
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
<u>사등</u>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
비수도권 및
투수지역 시·도지사등
· 
 1. ~ 5. (현행과 같음)
1. <sup>6</sup> 5. (현행과 끝름) ② (현행과 같음)
③
<u> </u>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u>비수</u> 도권 시·도지사등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
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
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
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
도지사등에게 임시허가의 신청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
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
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
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 1. · 2. (생략)
-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

<u>비수도</u> 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
<u>비수도권 및 특</u> 수지역 시·도지사등
 ④ (현행과 같음)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u>비수도권 및 특수지</u> 역 시·도지사등
 1.·2. (현행과 같음) ② <u>비수도</u>

권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 략)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 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은 제1 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 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에 이의 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 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 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그 내 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

권 및 특수지역 시·노지사능-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ㆍ
도지사등
비수도권 및 특수
<u>지역 시·도지사등</u>
8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
지사등
비수도권 및 특수지
<u>역 시·도지사등</u>

청하여야 한다.

#### ⑨ (생략)

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 ③ (생 략)

④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 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

⑨ (현행과 같음)
①
· 
비스트카 미 투스키션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u>비수도권 및 특수지역</u> 시·도지사등
<u>시·도지사등</u>
<u>시·도지사등</u>
시·도지사등 
시·도지사등

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u>비수도권 시</u>·도지사등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 ⑥ (생 략)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u>비수도권</u>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 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② (생 략)
-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u>비수</u> 도권 시·도지사등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은

비수도권 및 특수지
<u>역 시·도지사등</u>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
세되고(급시에서의 뒤도 87년) <u>비수도권 및</u>
<u>투수지역 시·도지사등</u>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1 & F
<u>비수도</u> 권 및 특수지역 시·도지사등-
<u> </u>
<u>비수도권 및 특</u>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생략)

제113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 저 하여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 조,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71 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로, "특화특구계획"은 "규제자 유특구계획"으로, "특화특구토 지이용계획"은 "규제자유특구 토지이용계획"으로, "특화사업" 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 치단체"는 "비수도권 시·도 등"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으로, "특화특구위 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로 본다.

제14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u> 주지역 시·노지사능</u>
④ (현행과 같음)
제113조(준용)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
<u>·도지사등</u>
제1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u>♦</u> )
②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부과 ·징수한다.

비수도권 및 특수지역 시·도 지사등-----